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민찬 소유물건(2025타경51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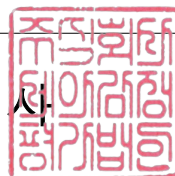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서번호: SD2025-02-05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세아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자동차)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범영

김범영



(주)세아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지사장 김범영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구백만원정 (₩9,000,0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민찬 (2025타경51832)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1.24	2025.11.19 ~ 2025.11.24	2025.11.25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자동차	1대	자동차	1대	-	9,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9,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i>유예지</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평가명령(사건: 2025타경51832 자동차임의경매, 소유자: 김민찬)에 따른 자동차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 이론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여기서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함.

나. 감정평가 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1월 24일로 하였음.

5. 실지조사기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11월 19일 ~ 2025년 11월 24일에 걸쳐 실지조사를 시행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임.

6. 보관장소

본건 차량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궁들로62번길 12(장성동 50-1)에 보관 중임.

II. 대상 물건(자동차)의 개요

(출처 : 귀 제시목록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건	차명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
1	Polo 1.6 TDI	19루1656	2014	승용 소형	-

별첨 "자동차감정평가명세표 및 사진용지"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대상 물건(자동차)의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1. 근거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실무기준" 에서 자동차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 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艙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실무기준(640-1)

가.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나.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동차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제조원가,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다. 감정평가 방법

- ①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관리상태·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 ④ 자동차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대상 물건(자동차)의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 방법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자동차의 연식, 차종,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이 유사한 동종 차종의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2. 방매가액

(온라인 중고차 매매 SKV 기준)

기호	차명	방매시점	연식(년)	제작사	주행거리 (KM)	방매가격(원)	비고
A	1.6 TDI	2025.11.24	2014	폭스바겐	134,301	9,900,000	-
B	1.6 TDI	2025.11.24	2014	폭스바겐	94,484	10,700,000	-

3. 평가전례

기호	평가목적	차명	기준시점	연식	제작사	주행거리 (KM)	감정평가액(원)	비고
a	경매	2.0 TDI	2025.01.22	2014	폭스바겐	149,550	8,500,000	-
b	경매	2.0 TDI	2024.10.29	2014	폭스바겐	130,807	8,500,000	-
c	경매	2.0 TDI	2024.01.31	2014	폭스바겐	102,921	9,000,000	-

4. 감정평가액 결정

본건	차명	수량(대)	감정평가액(원)	비고
1	Polo 1.6 TDI	1	9,000,000	-
합계		1	9,000,000	-

5.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와 같이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이론 등에 근거하여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결정하되, 평가목적·대상물건의 특성·유사 물건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감정평가가액을 결정하였음.

자동차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차 명 (차 종)	등록번호	차체	연식/형식	적재량(정원)	차대번호	제 작 자	감정평가액	비 고
			기관	출 력	연료/기통수	원동기형식	제작일자		
1	Polo 1.6 TDI	19루1656	차체	2014/6R	(5명)	WWWZZZ6RZEY 078489	폭스바겐	9,000,000	
			기관	1598cc	경유/4기통	CAY	2013-09-16		
합 계								₩ 9,000,000	
이 하 여 백									

자동차 감정평가요항표

(1) 년식 및 주행거리
(4) 사용연료

(2) 색상
(5) 유효검사기간

(3) 관리상태
(6) 기타(옵션등)

(1) 년식 및 주행거리

2014년식 으로, 2025. 11. 24. 기준 107,963km임.

(2) 색상

자동차등록원부 및 현황, 흰색임.

(3) 관리상태

보통임.

(4) 사용연료

경유임.

(5) 유효검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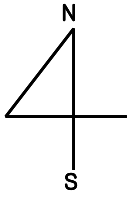
2024-05-15 ~ 2026-05-14 임.

(6) 기타(옵션등)

자동변속기 차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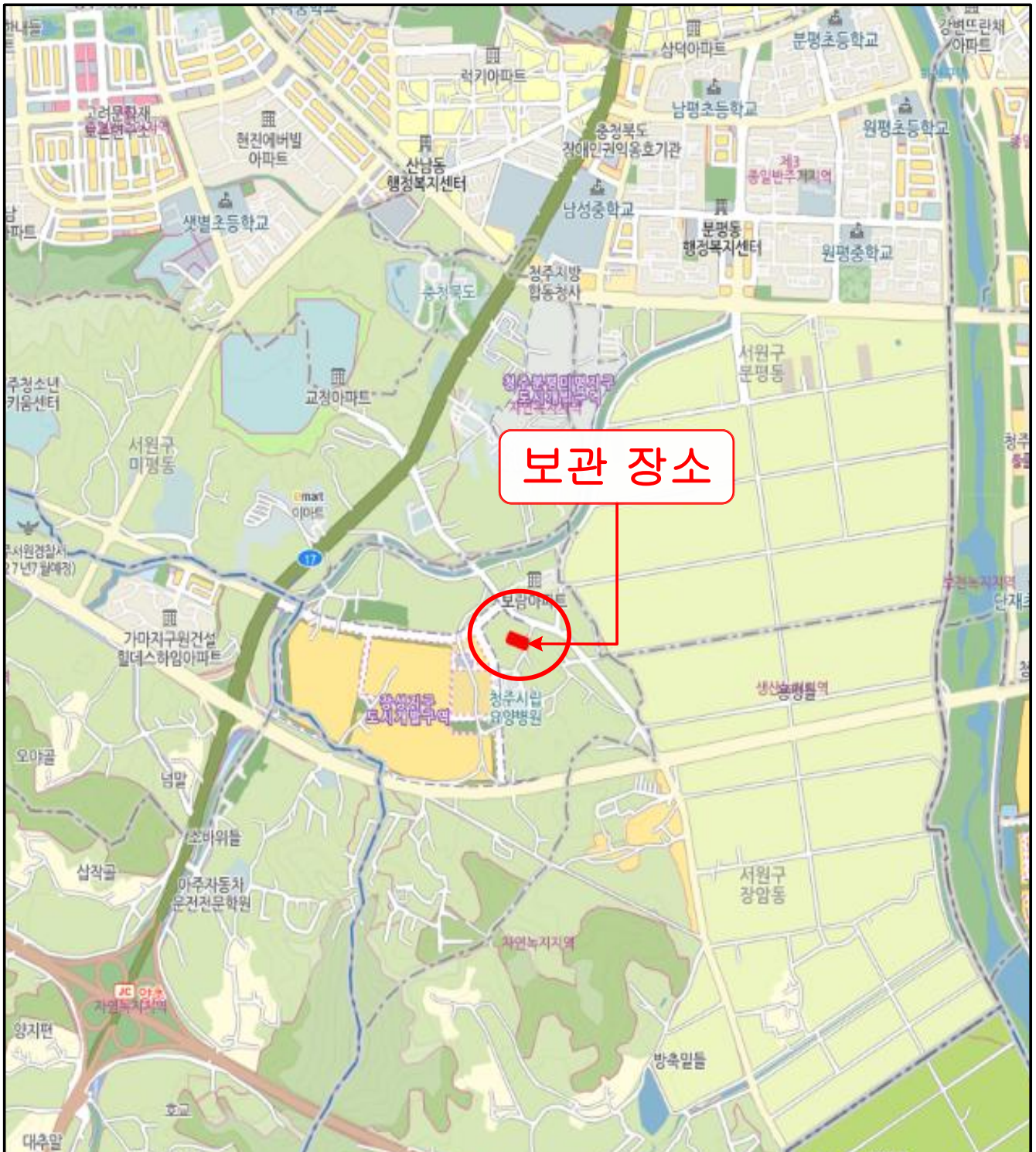
-중고차사고이력정보(카히스토리 참조)상, 전손, 도난, 침수 보험사고는 없음으로 확인되며,
내차피해 1회 상대차피해 없음으로 확인되는바, 참고하시기 바람.

보 관 장 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공들로62번길 12



사 진 용 지



[전 면]



[후 면]

사 진 용 지



[좌 측 면]



[우 측 면]

사 진 용 지



[운 전 석]



[계 기 판]